대전광역시의회 공고 제2017-192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30일

대 전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예고

1. 제안 이유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개정으로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교육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 지정을 해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교육전문위원의 개방형직위를 해제함(안 제3조).

3. 의견제출

-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의회의장(참조 : 총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기재)
-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42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의회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전화 042-270-5141, FAX 042-270-5059, E-mail : ppaemee@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 등

4. 개정 규칙안 : 붙임

대전광역시 규칙 제 호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정책실장과 교육전문위원"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정책실장"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하부조직) ① ~ ② (생	제3조(하부조직) ① ~ ② (현행
략)	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법정
입법정책실장과 교육전문위원은	<u> 책실장</u>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관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90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무국이나 시무과를 둘수 있으며, 시무국·시무과에는 시무국장 또는 시무과장과 직원을 둘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이 절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91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②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 1. 별정직공무원
- 2.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

□ 지방공무원법

- 제29조의4(개방형직위) ① 임용권자는 해당 기관의 직위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공직 내부나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시·도는 5급 이상, 시·군·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중 임기제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직위는 개방형직위로 본다. 〈개정 2012.12.11.〉
-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위별로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고 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임용하여야 한다.

- ③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를 지정·변경하거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변경 하려면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④ 개방형직위의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은 제32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한다.
- ⑤ 그 밖에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8.12.31.]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29조의3(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지원) ① <u>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u>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의회의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 직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두는 사무직원은 시·도의회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한다.[본조신설 2015.6.22.]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제9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 률」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대전광 역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17., 2017.10.18.〉
- 제5조(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 정 2005.6.19., 2017.10.18.〉 [전문개정 2015.2.17.]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 의 의 원 명 단

연번	의원명	서 명	비고
1	V4 88 32	Mynnh.	
2	224		
3	X 01 76	M	
4	女公安	pour	
5	M M33	176	
6	-M 39/200		
7	利和智	chr	
8	91 R 2	220	
9	要自己	The house of the same of the s	
10	A M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A	
11	16-1100	WIN	
12		•	
13			
14		,	
15			18. 11. 18